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공채 선발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

[2022.10.15. 시행 나책형]



클로저 이상용

현)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모두공 법원직 민법 전임
모두경 경찰간부 민법 전임
프라임 법학원 헌법 담당

youtube: 클로저 이상용

Instagram: mestarry_v2[DM으로 상담 가능]
E-mail: lacoda1@naver.com

안녕하세요~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무사히 시험을 마치신 모든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공채 선발 필기시험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견해는 강사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각자의 공부량과 시험 경험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평> [시험난이도: 중][문제풀이시간: 중]

(1) 형식적인 면에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가 6문제 출제되었는바, 작년[2021년에 역대급으로 많은 16개]에 비해 적은 비중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판례가 쉬웠고, 평이한 조문문제와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어 문제의 난이도 또한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최신 개정법(22.4.20)>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문이 출제되었는바, 시험 3주 전(09.26)에 모두공과 유튜브에 업로드 한 <최신 개정법 특강>의 효과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조문문제: 공직선거법은 어느 해의 시험이라도 조문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올해도 익숙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박스 조합형'[4번, 16번, 22번]과 '박스 괄호 넣기형'[3번, 10번]의 문항이 많아졌습니다. 12번(기부행위)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충실히 암기하셨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개정법 특강에서 만들어 드린 예상지문[특강자료 추록 4.0 p3]은 그대로 적용시켜드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3) 판례문제: 이번에도 기본서와 조문집에 모두 실려있는 판례가 출제되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9번의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에서 지문 4는 어렵지만 언젠가 나올 것으로 수업 때마다 미리 예측해 드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고, 특히 <대법원 판례>를 단독 문제로 구성한 19번은 기본서(4판) p475에서 원문을, 조문집(4판) p367에서 요약본을 실어드렸는바, 이번에 출제되어 보람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개정법 특강>과 최신 중요 판례는 항상 꼼꼼하게 시험 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2022.10.15. 클로저 이상용

01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④ 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해설

① 【○】

제15조 (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 ③ 【○】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22>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가9급 2013> <국가7급 2022> <개정 2022. 1. 18.> ★

④ 【×】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5, 2016, 2017, 2022>

정답 ④

0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② 【○】 ③ 【○】 ④ 【○】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3, 2022> <개정 2020.1.14.>
 -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7급 2022>
-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국가7급 2013, 2022><국가9급 2013, 2015, 2017>
-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2>

정답

- ①

03 다음은 사·도의회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국가7급 2022>

제22조(사·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원정수) ① 사·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나)으로 한다.

A. 100분의 14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해설

④ (가) [20/100] (나) ★ 개정법 특강세[22.09.26] 예상지문 적중!

제22조 (사·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가7급 2016, 2019, 2022>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국가9급 2018>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국가7급 2022>

<개정 2022.4.20.> ★

정답 ④

04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7급 2022>

- ㄱ.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ㄱ [O]

제40조 (명부열람)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5, 2018, 2021, 2022>

ㄴ [X] ★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③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22><국가7급 2022>

ㄷ [O]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국가7급 2014, 2015, 2017, 2021, 2022><국가9급 2022>

ㄹ [X]

제37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3, 2021><국가7급 2015, 2018, 2022>

정답 ②

05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해설

- ① 【×】 기간 제한 없다. ④ 【×】 할 수 있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통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19, 2022〉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4, 2015, 2019, 2021, 2022〉

- ② 【×】 ★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9〉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국가9급 2019〉〈국가7급 2021, 2022〉

- ③ 【○】

제58조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7급 2022〉

정답 ③

06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2〉

-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천으로 정한다.
-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
- ④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 ① [×] ② [×] ③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4, 2016, 2019, 2021, 202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국가7급 2016〉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4, 2015, 2016, 2022〉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국가7급 2015, 2019, 2022〉

④ [×] ★ 조문집 p257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규정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헌결 2011.3.31. 2009헌마286).

정답 ③

07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2〉

- 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③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 ④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해설

① 【O】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9급 2022〉〈국가7급 2022〉

② 【O】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결 2020.5.27. 2017헌마867).

③ 【O】 ★ 기본서 p370

근본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새로운 보조기구를 도입하는 데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현재로서는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헌결 2020.5.27. 2017헌마867).

④ 【x】 ★ 조문집 p266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결 2020.5.27. 2017헌마867).

정답 ④

08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결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위된 때에는 결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② 【×】 ③ 【○】 ④ 【○】

제200조 (보궐선거)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20> <국가7급 2022> <개정 2020.1.1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국가7급 2013, 2014, 2022><국가9급 2015> <개정 2020.1.14.>
-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결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3, 2022> <개정 2020.1.14.>
- 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위된 때에는 결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8, 2022><국가9급 2019>

정답 ②

09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① 【×】 ★ 조문집 p12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 오늘날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점,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결 2020.11.26. 2018헌마260).

② 【○】 ★ 조문집 p34

입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사람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3.8.29. 2012헌마288).

③ 【○】 ★ 조문집 p248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의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 무소속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헌정위원 헌결 2001.7.19. 2000헌마91).

④ 【○】 ★ 조문집 p52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한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한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헌결 2019.2.28. 2018헌마415). ★ <국가7급 2022 적중>

정답 ①

10 다음은 사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국가7급 2022>

(가)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나)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A. 공영방송사와 유선방송사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해설

③ ★ 개정법 특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⑩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1.> ★

정답 ③

1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②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③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④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해설

④ 【O】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7급 2016, 2022> <국가9급 2013, 2015, 2018, 2021>
 1. ~ 11. 삭제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국가7급 2014, 2022>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국가7급 2016, 2022>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국가9급 2014><국가7급 2022>

정답 ④

11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① 【○】 ② 【×】 ④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20, 2021, 2022><국가7급 2022>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가7급 2021, 2022>
 - ②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7급 2022>

③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국가9급 2013, 2016, 2017, 2022><국가7급 2019, 2021, 2022>

정답 ②

13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 ④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해설

① 【○】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국가7급 2017, 2022〉〈국가9급 2014, 2017, 2019〉

② 【○】

제52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4.6.>
-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국가7급 2016, 2022〉〈국가7급 2020〉

③ 【○】 ④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3, 2021, 2022〉〈국가9급 2014, 2017, 2018, 2019, 2020〉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 2020〉〈국가7급 2016, 2021, 2022〉

정답 ④

1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2>

- ①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④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해설

① 【○】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지나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과도한 기탁금**은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입후보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서민층과 젊은 세대를

대표할 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재력이 풍부하여 그 정도의 돈을 쉽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입후보 난립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여 결국 후보자의 난립 방지라는 목적을 공평하고 적절히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진실된 입후보의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입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정위헌 헌결 2001.7.19. 2000헌마91).

② 【×】 ★ 개정법특강4[09.26]

제56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6, 2022>(국가9급 2019)

<개정 2022.4.20.> ★

③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헌불 헌결 1989.9.8. 88헌기6).

④ 【○】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울러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도지사선거에서의 기탁금 5천만 원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액수를 초과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그렇다면 시·도지사 선거시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04.3.25. 2002헌마383).

정답 ②

15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국가7급 2022>

- ①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②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 ③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 ④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해설

① 【×】 ★★★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1. 제59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선거운동 ★★ <국가7급 2022> <개정 2020.12.29.>
 -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국가7급 2022>
 -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 4. 삭제 <2012.2.29.>
 -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국가7급 2022>
 - 6. 삭제 <2020.12.29.>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국가7급 2022>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19>
-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4, 2015, 2019, 2021, 2022>
-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0.12.29.>
-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개정 2020.12.29.>

정답 ①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7급 2022>

- 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 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해설

ㄱ 【○】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7급 2022>

ㄴ 【○】 ★

제12조 (선거관리)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7급 2022>

ㄷ 【×】 ㄹ 【×】 ★ 「공직선거법」의 개정만으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폐지할 수 없다.

헌법 제114조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①

17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 ③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 ④ 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해설

① 【O】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국가9급 2017〉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국가9급 2013, 2016, 2021〉〈국가7급 2022〉

② 【O】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국가9급 2013, 2015, 2016, 2019, 2021〉〈국가7급 2021, 20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국가7급 2022〉

③ 【O】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 ①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9급 2016, 2019〉〈국가7급 2022〉

④ 【X】 ★★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①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6, 2017, 2019, 2021〉〈국가7급 2020, 2022〉

정답 ④

18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②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① 【○】 ★ 두 번의 개정법특강을 통해 중요하게 다룸!

제155조 (투표시간)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국가9급 2022> <국가7급 2022> <신설 2022.2.16., 2022.4.20.> ★

② 【×】 ★

제155조 (투표시간)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8, 2022>

③ 【○】

제155조 (투표시간)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국가9급 2021> <국가7급 2022>

④ 【○】

제158조의2 (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0, 2022>

정답 ②

19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2 적중>

- ①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게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 ②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 ④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 기본서 p474 ~ p477에서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전문을 실어 드리고, 조문집 p366 ~ p368에서 요약해서 실어드린 <이재명 지사 사건>이 드디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① 【×】 ★ 기본서 p475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2조 제3항, 제82조의2 제7항, 제1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 참조),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 등은 토론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대판 전합 2020.7.16. 2019도13328).

② 【○】 ★ 기본서 p476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판 전합 2020.7.16. 2019도13328).

③ 【○】 ★ 기본서 p475 / 조문집 p367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판 전합 2020.7.16. 2019도13328).

④ 【○】 ★ 기본서 p475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판 전합 2020.7.16. 2019도13328).

정답 ①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해설

① [O] ② [O] ③ [x] * ④ [O]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국가9급 2021><국가7급 202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국가7급 2020>
 - 3. 재외투표관리관 <국가7급 2022>
-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7급 2022>
-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국가7급 2022>

정답 ③

21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22>
-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4, 2019, 2022><국가9급 2016>
-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가7급 2022>

② 【○】 ★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0, 2022>

③ 【○】

제27조 (임기 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국가7급 2013, 2022>

④ 【×】 ★ 개정법특강4[09.26]

지문은 2022.4.20. 개정되기 전의 조문임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2> ★ <개정 2022.4.20.>

정답 ④

2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국가7급 2022>

-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해설

ㄱ 【인정×】 ㄴ 【인정×】 ㄷ 【인정×】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9급 2015, 2016, 2019><국가7급 2019, 2022>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국가7급 2016, 2022>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국가9급 2016><국가7급 2022>

ㄹ 【인정○】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6>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9, 2022>

정답 ③

23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 ② 【×】 ★★★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3, 2016, 2021> <국가7급 2020, 2022>
- ⑥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7급 2016, 2022>

③ 【○】 ★ 개정법특강 ④ 【×】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국가7급 2022> <개정 2022. 1. 21.>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6, 2021, 2022> <국가9급 2021> <개정 2021. 3. 26.>

정답 ③

24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7급 2022>

-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④ 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해설

①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소외 1의 집 한 곳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6.14. 2007도2940).

② 【○】 ④ 【×】 ★ 조문집 p201

[1] 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도 그 전체가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고, 다만 그 중 민원실과 같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에는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예외 사유인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의 개별 공간마다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2]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중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결 2022.3.31. 2019헌바509).

③ 【○】 ★ 조문집 p200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판 2007.3.15. 2006도9042).

정답 ④

25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7급 2022)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④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173조 (개표소)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7급 2022>

② 【×】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2>
<신설 2021. 3. 26.>

③ 【○】

제178조 (개표의 진행)

-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국가7급 2022>

④ 【×】

제172조 (개표관리)

-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8, 2022>

정답 ③

• 모두공 2023 대비 예상 강의 일정

	기본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교재	①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기본서 (5판, 11월 초 출간) ②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5판, 11월 초 출간)	①최종병기 객관식 공직선거법 (3판, 12월 중 출간) ②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5판, 11월 초 출간)	①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5판, 11월 초 출간)
일정	11월 초	12월 중	2023/1월 말
강의 횟수	50강 내외	35강 내외	15강 내외

클로저
이
상
용

현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모두공 법원직 민법 전임
모두경 경찰간부 민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헌법 담당

- 저서 (1)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2017, 새흐름)
(2) 작은헌법(2018, 피앤씨에듀)
(3) 별이 빛나는 헌법(2019, 새흐름)
(4) 대한민국 헌법(2020, 새흐름)
(5) 원테이크헌법 기본서(2020, 좋은책)
(6) 원테이크헌법 객관식문제집(2021, 좋은책)
(7) 원테이크헌법 마무리핸드북(2021, 좋은책)
(8)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집 3판
(2021, 새흐름)
- (9)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5판
(2022.11, 새흐름 예정)
- (10)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기본서 5판
(2022.11, 새흐름 예정)
- (11)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객관식 3판
(2022.12, 새흐름 예정)
- (12) 클로저 5급헌법 핸드북
(2023, 예정)
- (13) 클로저 경찰헌법 핸드북
(2023, 예정)